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5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439호

시행일자 2025. 1. 2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-28호(2025.1.15.)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16(2025.1.17.)

2. 상기와 관련, 2025. 1. 27.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고시 산정지침에 따른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.

예) 기본진찰료 30% 가산, 응급진료 50% 가산(처치 및 수술료, 마취료 등)

3. 이에, 2025. 1. 27. 진료시 관련 산정지침을 참고하시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, 진료비 청구 및 수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협회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